

**학교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 동의안**

**인 천 광 역 시**

# 학교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 동의안

의안 번호	17
----------	----

제출연월일 : 2018. 7.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지역의 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는 교육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
-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법률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동 특례법(제2조)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개발 사업에 대해 의제 처리나 해석 등의 방식으로 동 특례법을 적용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2016.11.24., 2014두47686)
- 이에 따라 위 특례법에 열거되지 않은 개발사업은 특례법 적용이 곤란하여 특례법이 개정되었으나(2017.3.21.) 그 이전에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송도국제도시는 위의 개정된 특례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교육청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근거가 불투명해지는 문제 발생
- 한편, 영종·청라지역에 학교 신설이 불가하여 인천교육청은 증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소요재원의 일부만 지원함에 따라 인천교육청이 나머지 전액을 부담하기 어려워 지원을 요청

- 이와 관련하여 시 본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교육청간 수차례 걸쳐 협의하여 유상거래로 하되 그 소요비용은 시의 전출금(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으로 지원하고 영종·청라지역의 학교 증축비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해 주기로 합의
- 위의 지원 사항은 예산에 반영하여 전출할 계획이지만 그 이전에 협약을 통해 약속해 줄 필요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예산외 의무부담 사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 주요내용

- 학교용지 매입비 및 증축비 지원: 총 315억원(추정)

〈 인천교육청에 대한 지원액 산출내역(단위 억원) 〉

합 계	315
○ 송도국제도시 6·8공구 학교용지비 지원	
- 초·중 9개교 총부지 122,863㎡ × 905,670원(조성원가)×0.2(=약 222.5억원) + 고교1개교 부지12,639㎡×905,670원×0.3(=약 34.3억원)	257
○ 운서·해원초등학교 증축비 지원	
- 운서초등학교 44억원(학교 증축비의 50%)	58
- 해원초등학교 14억원(학교용지매입비의 50%)	

\* 위 지원금 이외에 경제청의 교육여건 개선분담금(총 511억원, 2017년 50억원 2018년 153억원은 예산에 기반영)과 특별조정교부금(62억원) 별도로 지원함

## □ 동의(승인) 사항

-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예산 외의 의무부담)
- 동의(승인)내용: 인천광역시의 인천교육청에 대한 학교용지 매입비 및 학교 증축비 지원

<별첨1>

## 지원대상 사업별 산출 기초

### □ 송도 6·8공구 학교용지비 지원

○ 송도 6·8공구 학교용지의 면적 및 토지가액 현황(추정)

연번	학교	면적(m <sup>2</sup> )	조성단가(원/m <sup>2</sup> )	토지가액(억원)
계		135,502.3		1,227
1	1초	17,985.90	905,670	163
2	2초	12,316.60	905,670	112
3	3초	11,868.10	905,670	107
4	4초	12,682.60	905,670	115
5	5초	17,767.00	905,670	161
6	6초	13,171.20	905,670	119
7	1중	12,054.90	905,670	109
8	2중	12,343.70	905,670	112
9	3중	12,673.10	905,670	115
10	2고	12,639.20	905,670	114

○ 송도 6·8공구의 학교용지 조성원가 및 공급가액(추정) : 257억원  
- 초·중 9개교 총부지 122,863m<sup>2</sup> × 905,670원(조성원가)×0.2(=약 222.5억원) + 고교1개교 부지 12,639m<sup>2</sup> × 905,670원×0.3(=약 34.3억원)

## □ 영종·청라지역 학교 증축비 지원

### 1. 영종지역 운서초등학교 지원 개요

#### ○ 증축사업 개요

- 현재 9실규모의 학교에 총 36실을 2단계로 증축(27실+9실)
- 교육부는 1학급당 34명, 인천교육청은 26.5명 기준이어서 교육청 기준 부족분 확충을 위해 추후 9실 추가 증축 계획
- \* 교육부 지원액 4,130백만원(증축용 보통교부금 3,051, 다목적강당용 특별교부금 1,079)
- 강당, 급식소 등은 최종 학급규모(45실)에 맞게 현 단계에서 신축

#### ○ 지원액 산출내역

- 총 사업비의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대상사업비는 교육부 지원액을 제외하고 시와 교육청이 50%씩 분담함

〈영종지역 운서초 학교용지부담금 지원 대상사업비 현황〉

총사업비(A)	추후 지원분(B)	특별교부금사업(C)*	대상사업비(A-B-C)
18,977	3,590 (9실분)	3,514	11,873

\* 특별조정교부금 지원대상 사업: 다목적강당, 연결통로, 급식소

\*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액: 1,863백만원  
= 3,514-1,079(교육부 분담)-572(교육청 분담)

〈영종지역 운서초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액 산출기초〉

대상사업비(A)	교육부 지원액(B)	분담대상(C=A-B)	지원액(D=C×0.5)
11,873	3,051	8,822	4,411

## 2. 청라지역 해원초등학교 지원 개요

### ○ 사업개요

- 당초 해원초 도로 건너편에 봉화초 이전 신축을 추진했으나 시의회에서 부결되어('16.12월) 봉화초 이전부지를 통합해 2개 학교부지를 하나의 학교로 운영하도록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를 받음
- 신축시설(18실+다목적강당)은 저학년용 운영 조건부로 교육부 통과
  - \* 교육청의 시책(학급당 26.5명) 기준 시 27실로 확대 증축 필요
- 사실상 18실 규모의 학교를 신축하는 것이어서 강당, 급식소 등도 별도로 신축해야 하는 상황

〈해원초 증축사업비 현황(단위: 백만원)〉

합계	학교용지비	증축비				
		계	일반교실	강당	급식소	연결통로
16,263	2,720	13,543	9,246	1,106	1,191	2,000

### ○ 지원액 산출내역

- 학교용지매입비 50%는 의무적 부담 (1,360백만원=2,720×0.5)
- 다목적강당(급식소 포함)과 연결통로는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4,297백만원=1,106+1,191+2,000)

〈운서초·해원초 지원 총괄(단위:백만원)〉

구 분	계	운서초	해원초
합 계	11,931	6,274	5,657
학교용지특별회계	5,771	4,411	1,360
특별조정교부금	6,160	1,863	4,297

<별첨2>

## 관계법령 주요내용

###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제6조(시·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생략)

② 시·도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증축 경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